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제3620호 |
|----------|--------|

제출년월일 2025. 5. .
제출자 김포시장

1. 제안이유

- 이용신청, 취소, 변경 등 미비 조항 및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사용료 면제 및 반환 규정 신설을 통한 사용료 징수 체계를 정비하고자 함
- 장비 사용에 대한 관련 조항 부재에 따라 장비사용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장비 사용을 위한 장비 대여 조항 신설(안 제5조의2)
- 나. 무분별한 이용신청 방지를 위한 이용신청 가능기간 및 신청·변경 등 명확화
(안 제7조)
- 다. 사용료 징수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이용 등 면제 조항 신설
(안 제10조)
- 라.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10조의2)
- 마. 별지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

3. 참고사항

- 가.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 나. 현행 자치법규 : 붙임
- 다.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라.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3. 26. ~ 4. 15. (20일)
 -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2) 부서협의결과

- 가) 규제사전심사 :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다)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라) 소비자정책심의 : 원안 가결

3) 중앙 및 도 관련부서

- 가) 중앙부처 :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나) 경 기 도 : 자산관리과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를 “공유 문화를 촉진하기” 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장비 대여)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 내에 비치된 음향시설·조명장치·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의 이용신청” 을 “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신청 및 이용 변경신청” 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이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의 제목 “(사용료)” 를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로 한다.

제10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을 “개방공간 및 장비의 사용료는” 으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가. 이용예정일 3일 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나. 이용예정일 2일 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이용예정일 1일 전 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이용을 취소하거나,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소관 실·과·소 | | 자산관리과 |
|-------------|--------------|-----------------------|
| 입 안 자 | 실·과·소장 성명 | 자산관리과장 김순애 |
| | 팀장 직위·성명 | 청사관리팀장 황원범 |
| | 담당자 성명·전화 | 지방공업주사보 김지운(☎2914) |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수집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FAX, 목적, 일시, 사업자등록번호 | 개방공간 이용을 위한 전산등록 및 이용승인 업무처리 | 신청서 : 3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 영구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승인서 (제7조제4항 관련)

| | | | | | | | | |
|-----------|------------|----------------------------------------------------------------------------------------------------------------------|--|-----------------|------------|-------------|-----|--|
| 신청인 | 개 인 () | 성 명 | | 생년월일 | | 전화 번호 | | |
| | | 주 소 | | | | | 이메일 | |
| | 단 체 () | 단체명 | | 대표자 | | 사업자 등록번호 | | |
| | | 전화번호 | | 이메일 | | FAX | | |
| | | 주 소 | | | | | | |
| 이용시설 및 공간 | | | | | 냉·난방기 이용여부 | 여 / 부 | | |
| 이 용 일 시 | | 년 월 일(요일) | | 시 분부터 | | | | |
| 이 용 목 적 | | 년 월 일(요일) | | 시 분까지(주 회, 총 회) | | | | |
| 장 비 사 용 | |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터 <input type="checkbox"/> 음향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input type="checkbox"/> 특수조명 | | 이 용 인 원 | | | | |
| 사 용 료 | | 일금 | | 원 (₩) | | | | |
| 안전책임자 | | 성명 : | | (연락처 : | |) | | |
| 승 인 조 건 | | 1. 이용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 | | |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u>마을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u> 위하여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u><신 설></u></p> | <p>제1조(목적) ----- ----- --- <u>공유문화를 촉진하기</u> ----- ----- ----- ----- -----.</p> <p><u>제5조의2(장비 대여) 시장은 이용자에게 시설 내에 비치된 음향시설 · 조명장치 · 프로젝터 등의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u></p> |
| <p>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생략)</p> <p><u><신 설></u></p> <p>② (생략)</p> <p>③ 시장은 <u>제1항의 이용신청을</u>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 <p>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u>제1항의 이용신청 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통해 이용 변경 또는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u></p> <p>③ (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 ----- <u>제1항 및 제2항의 이용신청 및 이용 변경신청</u>----- ----- -----.</p> |
| <p>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 · 징수하</p> | <p>제10조(사용료 징수 및 면제) ① ----- -----</p> |

여야 한다. <단서 신설>

<신 설>

<신 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방공간 및 장비의 사용료는 -----.

제10조의2(사용료의 반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되거나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개방공간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3. 이용자가 이용자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
 - 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
 - 나.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70퍼센트 반환
 - 다.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50퍼센트 반환

② 이용자가 이용예정일 당일에 이

[별지 제1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 | | | | | |
|-------------------|-------------------|-------------------|-------------------|------|------|
| 신청인 | 개인 () | 성명 | <u><신설></u> | | 전화번호 |
| | | 주소 | <u><신설></u> | | |
| | 단체 () | 단체명 | 대표자 | 전화번호 | |
| | | <u><신설></u> | <u><신설></u> | FAX | |
| 주소 | | | | | |
| <u><신설></u> | | | | | |
| 이용시설 및 공간 | | <u><신설></u> | | | |
| 이용시 일 | 시 | 년 월 일(요일) | 부터 | | |
| | 시 | 년 월 일(요일) | 분까지(주회, 총회) | | |
| 이용목적 | <u><신설></u> | | | | |
| 이용인원 | 총명 | 주차차량 | 총대 | | |
| 기타 참고사항 | | | | | |
| 사용료 | 일금 원(W) | | | |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또는 서명)

김 포 시 장 귀하

이용을 취소하거나, 시장이 제9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킨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취소)신청서
(제7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 | | | | |
|-------------------|-------------------------------|-------------------------------|-----------------------------|-----|
| 신청구분 | 생년월일 | --- | --- | --- |
| | 이메일 | --- | --- | --- |
| | 사업자등록번호 | --- | --- | --- |
| | 전화번호 | --- | 이메일 | --- |
| 신청구분 | <input type="checkbox"/> 이용 | <input type="checkbox"/> 변경 | <input type="checkbox"/> 취소 | |
| 냉·난방기 이용여부 | 여 / 부 | | | |
| 장비사용 |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터 | <input type="checkbox"/> 음향 | | |
| |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 <input type="checkbox"/> 특수조명 | | |
| 안전책임자 | 성명 : (연락처 :) | | | |
| <u><삭제></u> | | | | |

-----이용(변경·취소)을(를) 신청-----.

<신 설>

(뒤 쪽)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을 위하여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 수집 항목 | 수집 목적 | 보유기간 |
|----------------------------------------------|------------------------------|-----------------------------|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FAX, 사업자등록번호, 목적, 일시 | 개방공간 이용을 위한 전산등록 및 이용승인 업무처리 | 신청서 : 3년 세외수입 전산시스템 : 영구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필수) (예, 아니오)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김 포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승인서
(제7조제3항 관련)

| | | | | | | | |
|-----|--------|----|--|------|--|------|--|
| 신청인 | 개인 () | 성명 | | <신설> | | 전화번호 | |
| | | 주소 | | | | <신설> | |

[별지 제2호 서식]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변경)승인서
(제7조제4항 관련)

| | | | | | |
|-----|------|------|------|------|------|
| --- | ---- | ---- | 생년월일 | ---- | ---- |
|-----|------|------|------|------|------|

| | | | |
|-------------|-----------------------------------------------------------------------------------------|------|----------|
| 단체 () | 단체명 | 소재지 | 전화 번호 |
| | <신설> | <신설> | FAX |
| | 주소 | | |
| 이용시설 및공간 | <신설> | | |
| 이용 일시 | 년 월 일 요일 시 분부터 년 월 일 요일 시 분까지(주 회총 회) | | |
| 이용 목적 | <신설> | | |
| 이용 인원 | | | |
| 사용료 | 일금 원(W) | | |
| <신설> | | | |
| 승인조건 | 1. 이용승인일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 |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희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김 포 시 장

| | | | |
|------------|-------------------------------|-------------------------------|-------------|
| ----- | ----- | ----- | 이메일 |
| ----- | ----- | ----- | 사업자 등록번호 |
| 전화 번호 | 이메일 | ----- | ----- |
| ----- | ----- | | |
| ----- | 냉·난방기 이용여부 | 여 / 부 | ----- |
| ----- | ----- | | |
| ----- | 이 용 인 원 | ----- | |
| 장 비 사 용 | <input type="checkbox"/> 프로젝터 | <input type="checkbox"/> 음향 | ----- |
| | <input type="checkbox"/> 피아노 | <input type="checkbox"/> 특수조명 | ----- |
| 사 용 료 | ----- | | |
| 안전 책임자 | 성명: (연락처:) | | |
| 승인조건 | 1. 이용일 전까지----- | | |
| | 2 ----- | | |
| | ----- | | |

이용(변경)-----.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시민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및 평생학습 진흥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김포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김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
3. “시민”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
5. “이용”이란 이용승인을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동호회,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
6. “이용자”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7.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시설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 ① 시장은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사용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방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시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시설의 공간,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시설의 보안관리 및 이용주민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6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
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
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신청 및 승인) ① 시민이 개방공간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용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통해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승인 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이용승인의 취소·정지 등) 시장은 이용승인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① 시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② 개방공간의 사용료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 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변상책임) 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개방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이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양도 및 전대의 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개방공간의 이용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이나 단체에 양도하거나 재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9.6.26>

② 시장의 승인없이 개방공간 이용권을 양도 또는 재대여한 경우 해당 권리를 회수할 수 있고, 이미 납입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개정 2019.7.26>

제14조(준용규정) 사용료의 징수·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시 회계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김포시 평생학습조례

제26조(사용허가신청)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물을 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19.7.26>

② 평생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60일 전부터 사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한다.<개정 2019.7.26>

③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변경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19.7.26>

제27조(사용허가결정) 시설 사용허가 결정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의2(사용제한)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7.26]

1. 정치적인 행위, 종교활동,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
4.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8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 <개정 2016.10.12>① 시장은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부과 및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0.12, 2019.7.26> <각 호 신설 2019.7.26>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교육 또는 행사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3. 평생학습기관, 학습동아리 등이 평생학습을 위한 학습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후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19.7.26>

③ 사용료 징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2항에서 이동 2019.7.26>

제2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2. 사용일 전일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
3. 평생학습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

제30조(사용허가취소) 평생학습관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2.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 변경을 하거나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료를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9.7.26>
5.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31조(양도 및 전대금지) 평생학습관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나 단체는 시장의 사전 허가 없이 그 이용권을 타인 또는 단체에 양도 및 재대여할 수 없다.<개정 2019.7.26>